

기안용지

분류기호 문서번호	도정30315-537	(전화번호 734-2835)	전 : 구 정 4 조 1 항 구 정 장 전결사항
처리기간	35. 7.	구 정 장	서울특별시
시행일자	35. 7.		결재 1985. 7. 5
보존연한	영 구		

보부	부	청	장						
조	기	관							
		도시정비국	장						
		도시정비국	과	장					

기안	내	임	자	전	삼	화	85. 7. (금)	(김)	(인)
경	유								
수	신								
참	조								
제	유								

제 1안 : 내부 결재

1. 우리구 관내에 대하여 건설부 고시 제 225호 (83. 7. 6)로 풍치지구 변경 결정 (일부 해제)되었기에 도시계획법 제 13조와 동법 시행령 제 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및 시행코자 합니다.

가. 도시계획 용도지구 (풍치지구) 지적 승인 조서

구	분	지	구	명	위	치	면	적	비	고	정	서
변	경	풍	치	지	구	청	운	동	△ 6,250	㎡	일	부
											해	제

참부 : 관계도서 각 1부. 판인

제 2안 : 고 시 안

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

도시계획 용도지구 (풍치지구) 지적 승인

1. 건설부 고시 제 225호 (83. 7. 6)로 변경 결정 (일부 해제)된 도시계획 용도지구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조와 동법 시행령 제 6조에 의거 다음

원본은 조로구청 도시정비과에 보관함

각 같이 지적 승인 하(구)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개도서는 서울 특별시 종로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 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5. 7.

서울 특별시장

가. 지적 승인 조서

구 분	지구명	위 치	면 적	비 고
변 경	풍치지구	종로구 정운동 2번지 입대	△ 6,250 m ²	일부 해제

*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제 3 안

수신 : 건설부 장관 (서울 특별시장)

발신 : 서울 특별시장(구청장)

참조 : 도시계획과장

제목 : 동 건

1. 건설부 고시 제 225호 (83. 7. 6)로 변경결정(일부 해제)된 도시계획
용도지구 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지적 승인 하였기 보고합니다.

첨부 : 고시문 사본 및 도면각 1부.

제 4 안

수신 : 총무처 장관 (서울 특별시장)

발신 : 서울 특별시장 (구청장)

참조 : 문화공보관 (공보관)

제목 : 관(시)보 게재외퇴

1. 도시계획 용도지구 (풍치지구) 지적 승인 사항을 아래와 같이 관(시)
보에 게재 외퇴 하오니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게재구분 : 고시

나. 게재건명 : 도시계획-용도지구 (풍치지구) 지적 승인

다. 법적근거 : 도시계획법 제 13조

제5안 동로구청

수신 : 서울 특별시장 발신 : 구청장

참조 : 시민과장

제목 : 관인 남인 의뢰 4496

1. 담구 관내 도시계획 용도지구 지적승인에 대하여 건설부 및 총무처 시행문에 관인 남인 의뢰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 : 건설부 및 총무처 공안 문서본 각 1부.

제6안

수신 : 청운동장 발신 : 구청장

제목 : 동 건

1. 우리구 관내 도시계획 용도지구를 벌침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기 통보 하오니 주민 홍보등 관련업무 에 단전을 기하도록 할것.

첨부 : 고시문 식본 및 토면각 1부.

제7안

수신 : 수신처 참조 발신 : 과 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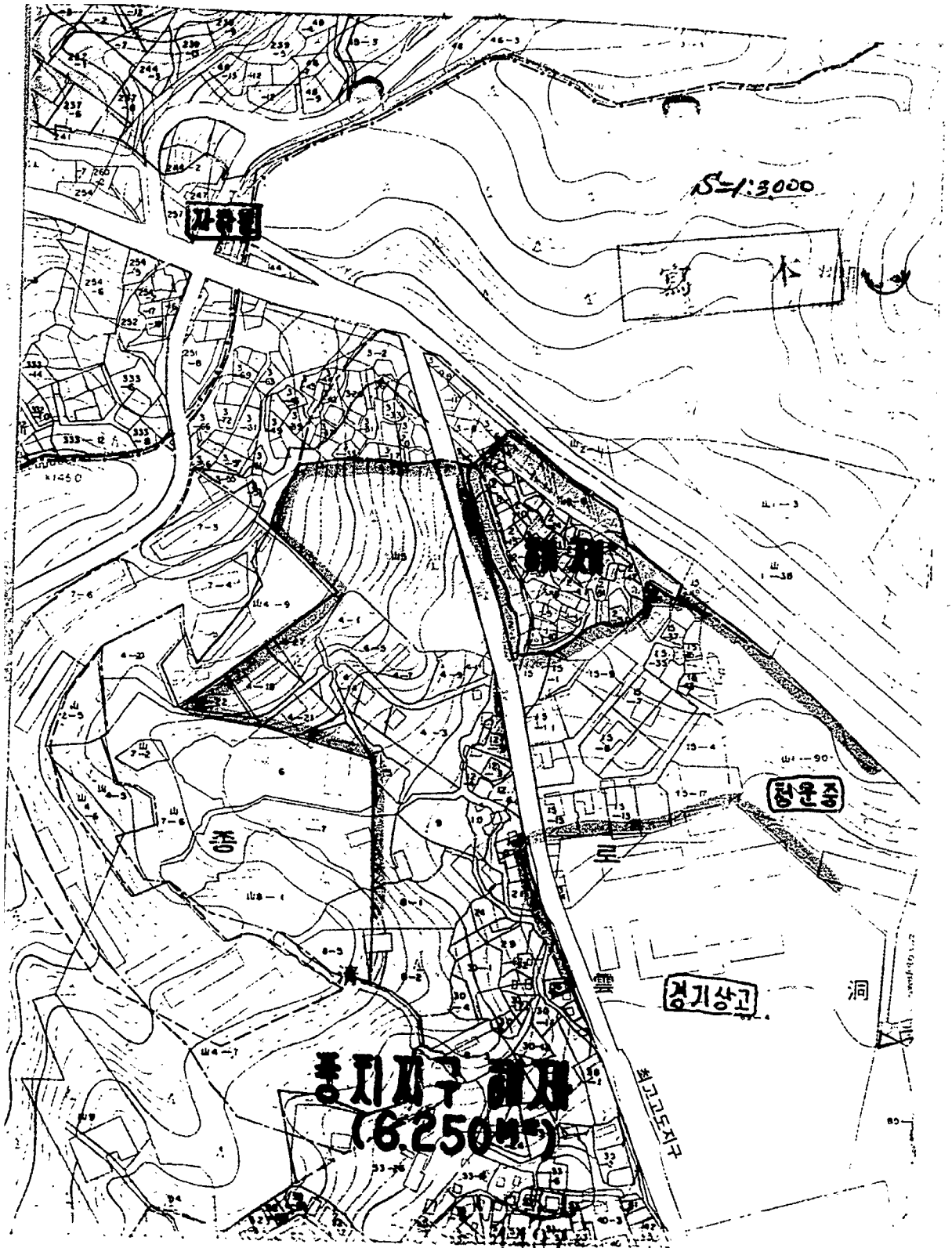
제목 : 동 건

1. 우리구 관내 도시계획 용도지구를 벌침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기 통보 하오니 관련업무 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 : 고시문 식본 및 토면각 1부.

수신처 : 주택과장, 건축과장. 끝.

4496



1:3,000

가동면

鳥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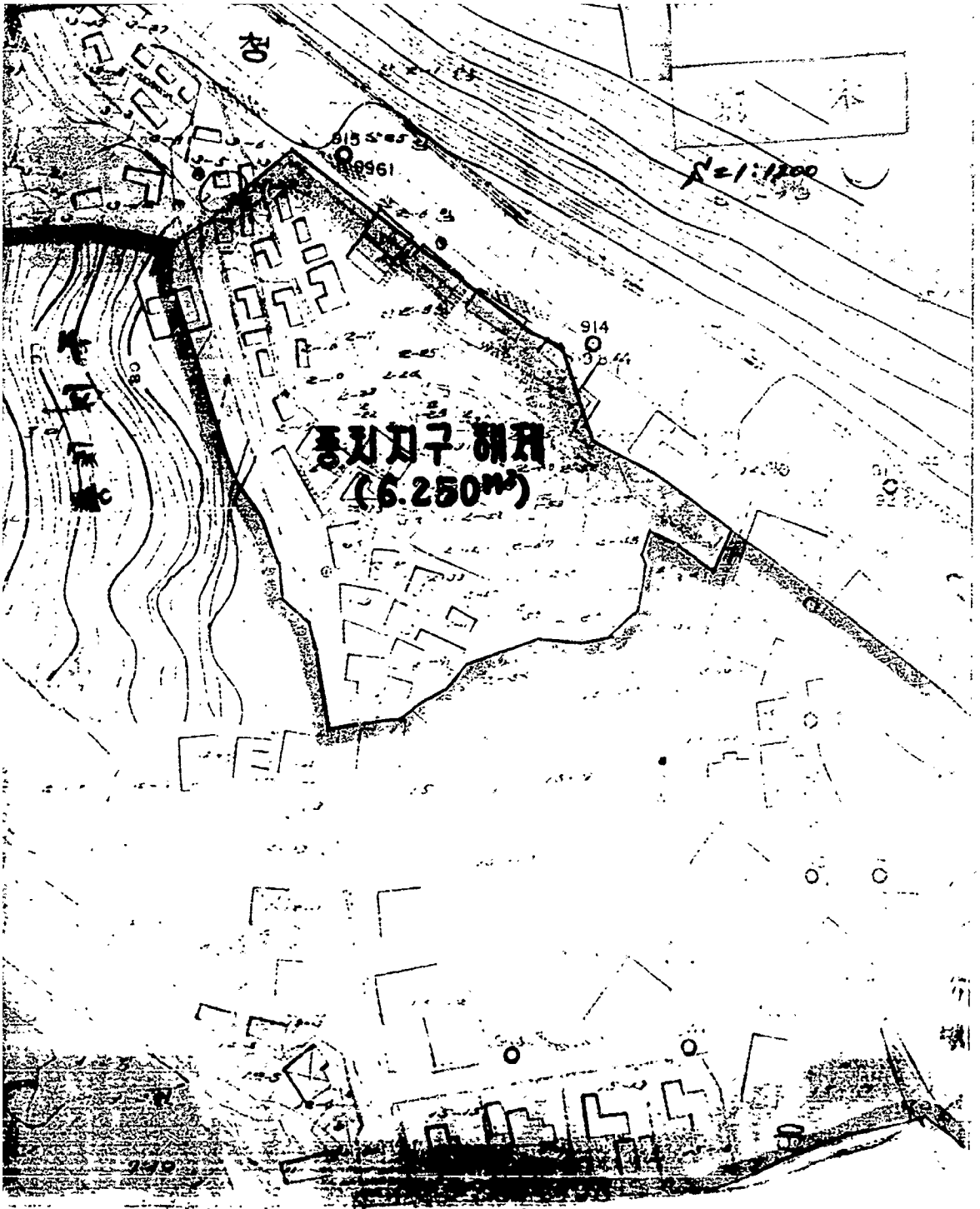
정운중

경기상고

총지구 면적
(6,250㎡)

학교로

洞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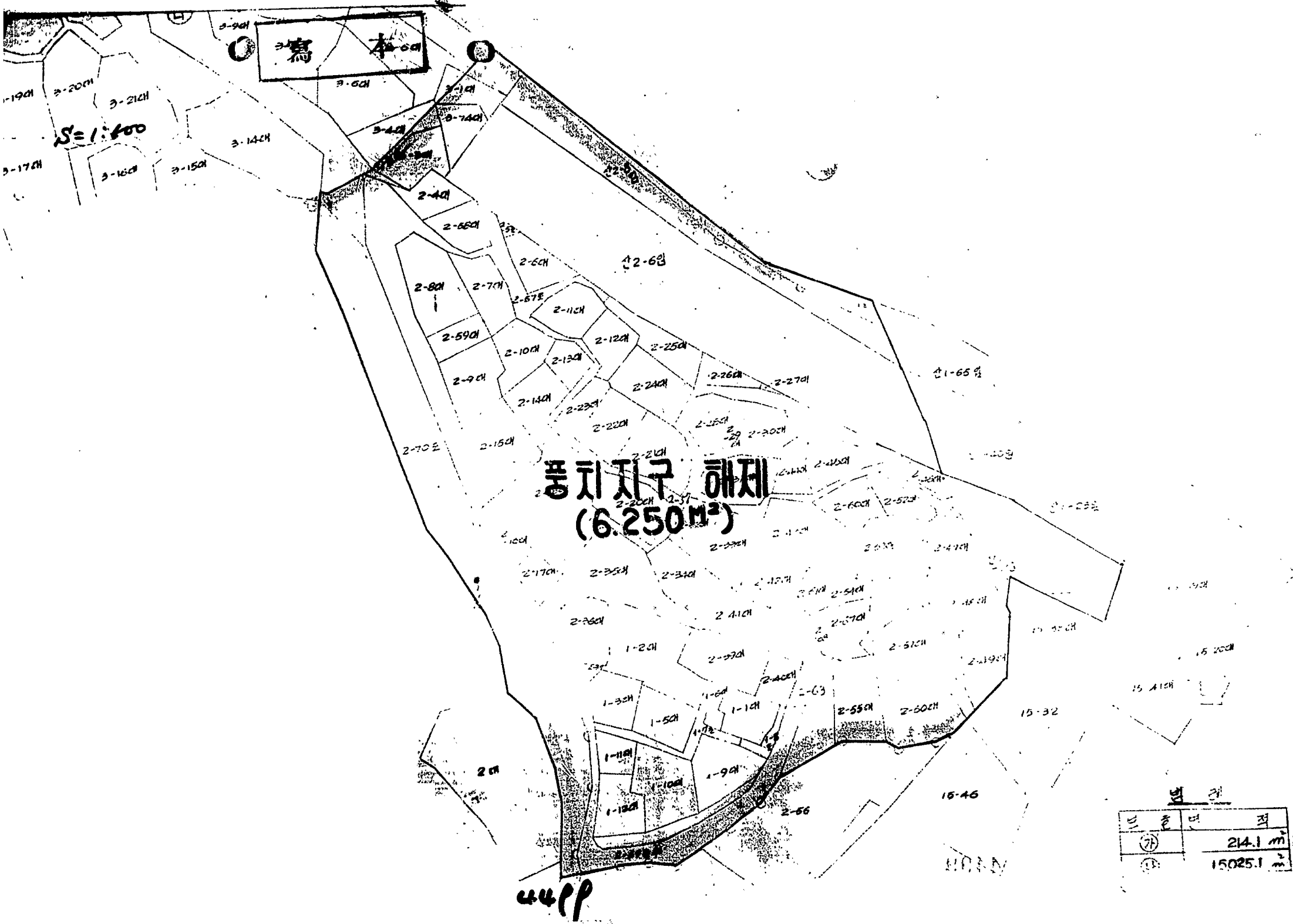
청

915 5.05 2
9961

1:1200

914

종치지구 해저
(6.250㎡)



구분	면적
⑦	214.1 m ²
⑧	15025.1 m ²